

##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지침

제정 : 2020. 11. 23.

**제1조(목적)** 인하대학교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을 방지하고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의 정착 및 소프트웨어의 효과적인 관리,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 범위)** 이 지침은 교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하며, 본교 구성원 전체(교직원, 조교, 학생, 연구원 등)와 외부업체 직원 모두에게 적용된다.

**제3조(정의)**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
- ① “소프트웨어”란 컴퓨터·통신·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·제어·입력·처리·저장·출력·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·명령(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)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.
- ② “소프트웨어의 관리”란 소프트웨어의 취득, 이용, 폐기 또는 처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.
- ③ “불법복제”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④ “라이선스”란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특정 조건을 준수하는 상황에서의 소프트웨어 사용 권리를 말한다.

**제4조(관리책임자의 지정)**

- ① 총장은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CIO(Chief Information Officer, 최고정보관리책임자) 또는 정보통신처장을 총괄 책임자로 지정한다.
- ②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의 관리를 위하여 대학본부, 대학(원), 부속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(정/부)를 지정하여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구매 및 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.

**제5조(총괄 책임자 및 부서관리책임자 업무)**

- ① 총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1. 학교 소프트웨어 캠퍼스 라이선스에 대한 계약 및 관리
  2.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·감독
  3.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

②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는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 소프트웨어 폐기를 수행하며, 총괄 책임자가 요청하는 기타 소프트웨어 관리업무에 대하여 조사 및 회신한다.

**제6조(소프트웨어 구매)**

- ① 학내 구성원 전체가 사용하는 공용 소프트웨어는 총괄 책임자가 구매하여 제공한다.
- ②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는 부서책임자가 구매 예산을 확보하고 구매하여야 한다.

**제7조(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의 정의)**

- ① ‘불법 소프트웨어 사용’이란 적법한 구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, 임의로 다운로드/복제/설치하여 사용하거나 계약(약관)상의 범위를 벗어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.
- ② 상용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전자계시판 또는 인터넷에 올리거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배포하는 행위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해당한다.
- ③ 세어웨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행위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해당한다.
- ④ 세어웨어나 프리웨어의 경우도 교육기관 내에서 사용 시 적법 여부를 해당 저작권사에 확인하여 사용한다.

**제8조(적발시 규제사항)** 교내 구성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해야 한다.

- ① 학내에서 학교자산 등록 PC뿐 아니라 개인 PC에도 적법한 소프트웨어만을 설치하여 사용해야 한다.
- ②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개인 PC 및 자산 미등록 PC는 학내 반입을 금지한다.
- ③ 학내 IP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학생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세어웨어 및 프리웨어의 경우도 불법 소프트웨어로 간주 될 수 있다.
- ④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.
- ⑤ 단위 부서장은 단위 부서의 구성원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.
- ⑥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되어 학교에 대해 법적 또는 재정적 피해를 주는 경우 사용자 및 해당 부서(혹은 해당 기관)의 장에 대하여 징계 처분 할 수 있으며, 모든 법적 또는 재정적 피해는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며, 학교가 배상금 등 재산상 제재를 받은 경우, 그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해당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.
- ⑦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된 사용자는 총괄 책임자가 지정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.
- ⑧ 총괄 책임자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적발 시, 해당 단말기의 캠퍼스 전산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부 칙<2020. 11. 23.>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